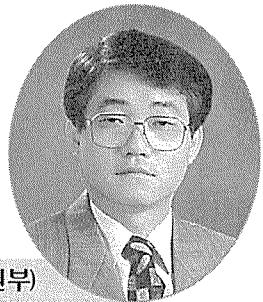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남인석 과장(산업자원부)

1. 추진배경

전자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모든 언론매체는 “사이버”라는 새로운 단어를 유행병처럼 쓰고 있으며 사이버 몰, 인터넷 상점, 전자상거래, 사이버 증권, 사이버 도서관, 심지어 사이버 교회, 사이버 부동산, 사이버 묘지…

전자상거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급변하는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고 사이버세계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나 역시 40대 중반을 넘어선 세대로서 혁혁거리면서 겨우 앞가림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년 한해 동안 여러 전문가 선배 동료들의 도움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번달 1일부터 동법의 시행에 맞추어 전자업계 여러분께 동 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지면에 통해서나마 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의 와튼제량경제연구소(WEFA)는 한국의 올해 전자상거래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며 2003년에는 11조5200억원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전자상거래규모도 올해 3400억달러

를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1조7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달 중순이면 세계 50만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사이버 시장인 글로벌마트(Global Mart)가 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로 작년에 100여개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버 몰이 현재 3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출의 첨병역할을 하는 종합상사들이 사이버 종합상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 시스템은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표 참조), 기존거래 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전자거래의 특징은 非對面的, 非書面的, 無形의商品, 脫國境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징 때문에 기존의 민법, 상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거래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 상거래 규범에 적용을 받아야하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제도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전자거래 도입 및 구현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향상

〈 전자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와의 비교 〉

구 분	전자거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
유통채널	기업 ↔ 소비자	기업→도매상→소매상→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전세계(global marketing)	일부지역(closed clubs)
거래시간	24시간	한정된 영업시간
고객수요파악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digital data)	영업사원이 획득(정보 재입력 필요)
마케팅활동	쌍방향 통신을 통한 1대1 interactive marketing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
고객대응	needs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needs포착이 어렵고 대응지연
판매거점	cyberspace	판매공간 필요

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경위

2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전자거래기본법」 탄생하였다. 금년 1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2월 8일 공포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96년 말부터 입법을 준비하여 2년 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되었으며, 2개법안의 논의의 초점은 법제정시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 소비자 보호의 기능강화 등 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과의 절충을 거쳐서 현재 공포된 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힌다.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법이 마련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하여 기본법안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한 정부제출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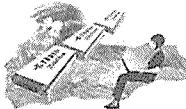
라당 李祥羲의원, 국민회의 朴光泰의원 등 50인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병합 심의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정부제출안과 비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일대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전자거래기본법안 주요 내용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에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법 제5조~7조)하여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동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였다.

둘째로,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법 제9조~12조)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



원칙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96년도에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전자거래는 국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한 국제적인 권고법인 동법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로,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이에 필요한 조항을 두었다.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법 제13조~14조)하였고,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거(법 제18조)를 마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분야가 21세기에 새로이 부상하는 비즈니스의 핵으로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함은 물론, 전자상거래의 추진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관련 우리나라의 제도와 기술수준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범부처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거래관련시책을 입체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설립, 전자거래의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촉진에 관련된 조

·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정부의 제한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OECD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97.3월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근거조항(법 제16조~17조)을 두었으며 공인인증기관지정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전자서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에 관한 모범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향후 동법을 모태로 전자거래에 관련 다수의 개별법(예:전자자금이체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것이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은 비대면으로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거래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신뢰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인한 제3자인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진정성여부와 서명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다른 나라의 전자거래관련법에서 볼 수 없는 전자거래관련 촉진시책과 기반조성에 관한 내용(법 제4장)이 포함되었다. 이는 전자상거래

항 등을 규정(법 제20조~25조)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민간주도로 전자거래를 촉진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장 산자부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법 제22조)를 마련하였다.

전자거래진흥원은 현재 운영중인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전자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거래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법 제23조)을 두었으며,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이용을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법 제26조)이다.

동센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현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기본법으로 이관한 것이며,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을 통하여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 제27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메카니즘을 강구토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법 제28조)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보호문제이다. 소비자의 권리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도 기존의 상거래에서 보호받는 수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줌으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소비자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마련토록 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전자거래 관련 정보제공,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 등을 명시(법 제29조~32조)하였다.

이상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고 다음은 법 시행을 위해 제정중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으나 이는 앞서 설명한 법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됨을 밝혀둔다. 시행령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는 바, 이는 전자상거래가 기존 상거래와 달리 非對面, 非書面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이해가 필요한 전문분야이며,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동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다른 분쟁조정 위원회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전자거래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근거를 두었는 바,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정비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지침은 현재 OECD에서 논의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향후 마련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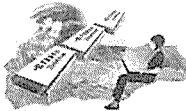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셋째, 전자거래촉진계획 등 전자거래 촉진 전반에 대해 심의할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될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기능·구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전자문서 국제표준제정기구인 UN/CEFACT의 한국대표기관으로서 전자문서 표준의 제·개정, 표준의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관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보급 및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은 관련시설 및 인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지원경비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규정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총괄토록 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한국전자문서표준을 사



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상호 협의를 거쳐 표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맷음말

전자거래의 확대는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경제주체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산, 거래, 유통, 소비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하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기업경영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유통업, 제조업은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가격인하 및 유통구조가 근본적 변화하고 도매업과 같은 중간유통업 및 면세점의 쇠퇴할 것이며 무역금융업, 서비스업은 전자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람중심의 은행이 시스템 중심의 전자은행으로 대체될 것이다.

또한, 신용장 위주의 무역거래와 상거래 관습의 변화로 중소무역업체와 오퍼상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접속사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인터넷 서비스업(ISP), 홈페이지 제작대행업, 전자인증업, 인터넷 컨텐츠비즈니스 등 무수히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출현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기업에게는 판매·운영비용 감소, 효율적 마케팅, 대 고객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고객수요에 맞는 상품이 개발되고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비전을 이끌게 될 것이고, 개방 경쟁환경에 처하게 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및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가 넓어지고,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잠재적 공급자와 직접 거래하게 되고, 보다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 보다 저렴한 제품을 제공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자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자상거래가 도전이라기보다 새로운 사업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관련 입법 추진 동향

▣ 국제기구

-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 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하여 각국의 관련입법시 참고토록 권고
 - 현재에는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에 대한 통일규범 제정중
- OECD
 - 98.10.7~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거래관련 기본규범 확립을 주요 이슈로 다룸

▣ 주요 국가

- 미국
 - 미국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초안 발표
 - 또한 전자거래 관련 약 50여개의 법률제정을 추진(인터넷 과세유예법안, 전자상거래촉진법 등)
- 캐나다
 - British Columbia는 UNCITRAL 모델법을 기초로 입법 추진중
- 호주
 - Attorney General of Australia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발표하였고(98.4.2) 99.1.1일부터 시행
- 싱가풀
 -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Bill)을 제정하여 98.6.29일 의회에서 의결